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기 지정 촉구서

촉구 · 계속근로 1년 미만 근로자용

수 신		문서번호	
소속 / 직위		통 보 일	년 월 일
촉구 구분	☐ 1차 촉구 (최초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) ☐ 추가 발생분 촉구 (최초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 기준 5일 이내)		

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귀하의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알려드립니다. 아래 지정란에 사용 시기를 적어 이 촉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회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입 사 일	년 월 일	최초 **1**년 만료일	년 월 일
발생 일수	일	사용 일수	일
미사용 일수	일	통보 기한	년 월 일

사용 시기 지정 **(**근로자 작성**)**

연번	사용 예정일	일수	구분**(**연차**/**반차**)**
1	년 월 일		
2	년 월 일		
3	년 월 일		
합계		일	

년 월 일 근로자 : (서명 또는 인)

년 월 일

회 사 명 :

대 표 자 : (직인)

※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 제1호 본문은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촉구하도록 하고, 같은 호 단서는 서면 촉구 후 새로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다시 촉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. 두 경우 모두 이 서식을 사용하고 맨 위 촉구 구분에 표시하세요.